#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(이종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593 발의연월일: 2024. 10. 7.

발 의 자:이종욱·송언석·김종양

이종배 • 박정하 • 최형두

송석준 · 김상훈 · 박수영

구자근 • 박수민 • 박대출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,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출국납부금을 부과 · 징수하고 있음.

그러나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과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간 관련성이 미흡하며,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 완화를 위해 출국납부금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최근 부담금 정비 추세에 맞춰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,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「국회법」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.

법률 제 호

##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

국제질병퇴치기금법을 폐지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제질병퇴치기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·채무 및 그 밖의 권리· 의무는 이 법 시행일에 국가의 일반회계가 승계한다.

제3조(출국납부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출국납부금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종전의 「국제질병퇴치기금법」 제5조의2에 따른다.